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의 중요 전략사업 중 하나인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단기 계획의 수립·시행과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지원 및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나.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수탁자등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신설(안 제7조)

라.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 정비(안 제9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는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 승강기산업은 고속·스마트화 등 IT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산업으로 시장경제 우위 확보와 승강기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승강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5년마다 승강기산업 육성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 안 제7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승강기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승강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5가지 사항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과학인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업무 담당 과장으로, 안 제11조에서 간사를 업무 담당과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격하’하고, 위원회를 안전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려 한 것은 관(官)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승강기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民間)주도가 아닌 관(官)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 경직된 운영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 현행 조례에 명시된 충청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삭제’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의 참여를 제한한 이유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1호에서는 강화한 반면, 제3호에서는 완화한 것으로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한 증언, 감정

외에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승강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위원회 설치,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승강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격하한 점,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의원의 참여를 제한한 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있어 그 조건을 완화한 점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